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(고위나급~ 7급상당)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별정직공무원(고위나급~7급상당) 채용 최종합격자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1일

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

1 합격자 명단

• 고위나급(2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조사2A1(1명)	01	○ 근 ○
조사3A1(1명)	02	○ 성 ○

※ 조사2A1 예비합격자 : 조사2A1-06

• 4급상당(3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조사A2	01	○ 창 ○
	08	○ 선 ○
	13	○ 준 ○

※ 조사A2 예비합격자 : 조사A2-16

• 5급 상당(9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조사A3	03	○ 경 ○
	04	○ 대 ○
	06	○ 병 ○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조사A3	14	○ 고 ○ ○
	16	○ 지 ○
	17	○ 미 ○
	18	○ 재 ○
	26	○ 지 ○
	36	○ 원 ○

• 6급 상당(9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조사A4	02	○ 평 ○
	06	○ 성 ○
	12	○ 민 ○
	25	○ 길 ○
	31	○ 현 ○
	34	○ 혜 ○
	43	○ 효 ○
	53	○ 지 ○
	54	○ 희 ○

※ 조사A4 예비합격자 : 조사A4-17, 조사A4-35, 조사A4-09

• 7급 상당(3명)

응시코드	응시번호	성명
조사A5	11	○ 진 ○
	12	○ 상 ○
	15	○ 변 ○

※ 조사A5 예비합격자 : 조사A5-10

2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- 등록대상 : 합격자 (총 26명)
- 등록기간 : 2026. 9. 17.(목) 10:00 ~ 18:00
- 등록장소 : 서울 중구 퇴계로 173, 남산스퀘어빌딩 19층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 채용담당자
- 제출서류
 - ① 신원진술서 1부 <서식 1>
 - *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(3cm×4cm) 사진 부착
 - ②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각 1부
 - ③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<서식 2>
 - * 별도의 검진 기관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 **합격자께서 개별적으로**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시고 신체검사를 완료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 - ④ 신원진술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* 1장
 - * 이미지파일 이메일로 채용후보자 등록 전까지 제출(jinsilrecruit@korea.kr) =
- 제출방법 : 합격자 본인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**신분증*을 소지한 후** 등록장소에 **직접 방문 제출**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
3 기타 유의사항

-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을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임용 예정입니다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별정직 고위공무원(나급)은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역량평가, 인사검증 및 신원조사,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등을 거쳐 이를 모두 통과한 최종 1명이 임용됩니다. 역량평가 등 추후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휴대전화(SMS포함) 또는 e-mail로 개별 통지합니다.
-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실 (☎02-3393-977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문의는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지원담당관실(☎02-3393-977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서식 1>

(2쪽 중 제1쪽)

신 원 진 술 서

※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☑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성명	한자	주민등록번호	【사 진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			
등록기준지						
주소						
실거주지						
직장	직장명 : 소재지 :	연락처 휴대폰 : E-mail :				
국적	☐ 대한민국	☐ 복수국적 국가명 :	☐ 외국국적 국가명 :	배우자 및 자녀 국적		
자격·면허						
재산	본인 및 배우자	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				
	미혼 자녀	부동산 : 만원, 동산 : 만원, 채무 : 만원				
정당·사회 단체 활동	☐ 있음	단 체 명	기 간	직 책		
	☐ 없음		. . . ~ . . .			
병역	본인	군 별	병 과	최종 계급	기 간	미필 사유
	자녀 (성명)				. . . ~ . . .	
	자녀 (성명)				. . . ~ . . .	
학 력 (고교이상)	학 교 명	기 간	전공 학과	학 위	소 재 지	
		. . . ~ . . .				
		. . . ~ . . .				
		. . . ~ . . .	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(2쪽 중 제2쪽)

경 력	기관 또는 업체명	기 간	직 책(직급)	상벌 관계(일자)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기 간	거주 목적	동반 가족	
		. . ~ . .			
		. . ~ . .			
가족 관계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직 업·직 책	거 주 지
부모 배우자 자녀					
배우자 부모					
북한 거주 가족					
친교 인물	관 계	성 명	직 업·직 책	연 락 처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「국가 공무원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
년 월 일					
작 성 자 성명 인 (서명 또는 날인)		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<서식 2>

■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[별지 제7호 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					사 진 (3.5cm × 4.5cm)	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	
⑥ 검사 시						
⑦ 재 사 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※ 압인 또는 계인						

검 사 내 용					
키	cm	체 중	kg		
허리둘레	cm	혈 압			
(교정)시력	좌: ()	색 신	(교정)청력	좌: ()	
	우: ()	(색 각)		우: ()	
종 양 질 환			이 비 인 후 질 환		
호 흡 기 질 환			심 혈 관 질 환	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 분 비 질 환			혈 액 질 환		
신 경 질 환			피 부 질 환		
근골격계 질환			안 질 환		
정 신 질 환			흉 부 X선 검 사		
기 타					

마약류 검사											
필로폰		대마		케타민		엑스터시		코카인		아편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	[]합 격	합격 사유	
합격 여부	[]판 정 보 류		
판정보류 사유			
(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(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)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/㎡)]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【응시자】
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[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), 운전면허증, 여권 등]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【검진기관】

-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: 도장을 눌러 찍음) 또는 계인(결침도장)을 해야 합니다.
 - "검사 내용"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판정보류"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"라고 적습니다.
 - 다. 규정된 마약류 항목을 모두 검사하여 그 결과를 "양성" 또는 "음성"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.
 -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
(예시: "만성골수성백혈병"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
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"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.
- 검사 내용 중 "마약류 검사" 항목만 제외하거나, 해당 항목만 검사하여 판정한 신체검사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 -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